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2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복지교육국 분장 사무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분장사무 조정(안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)

1) 복지교육국(안 제8조제2항)

- 복지정책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
- 노인정책, 노인지원, 통합돌봄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 (가족복지과-44364호, 2025. 11. 12.)

라. 입법예고: 2025. 11. 10. ~ 11. 18.(8일간) / 의견없음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통합조사관리”를 “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장애인복지, 생활보장”을 “통합돌봄, 장애인복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복지교육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</p> <p>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복지정책, 희망복지, <u>통합조사관리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노인정책, 노인지원, <u>장애인복지, 생활보장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8조(복지교육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</u> -----</p> <p>2. ----- <u>통합돌봄, 장애인복지</u> ----- 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4호의 -
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조직운영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등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,
-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
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
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 : 기획예산실
- 직 급 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 : 손미영
- 연 락 처 : 052-290-3062